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하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제1항)

육아휴직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통상임금 80%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월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함

나. 육아휴직 사후지급 방식 폐지(안 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제95조의3제4항, 제98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특례적용자 사후지급방식 미적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 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 정비(안 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1개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상한액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안 제104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마.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29조)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까지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중 “만 29세”를 “29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 휴직등”으로, “고용한”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를 “육아휴직등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을 “육아휴직등을”로, “고용하여”를 “고용 또는 사용하여”로, “고용한”을 “고용 또는 사용한”으로 하며, 같은 목 2) 전 단 중 “고용한 경우”를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등”으로, “고용한 경우”를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2) 후단 중 “고용한”을 “고용 또는 사용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용하기”를 “고용 또는 사용하기”로, “고용기간”을 “고용 또는 사용 기간”으로, “고용관계”를 “고용 또는 사용 관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육아휴직등을 활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

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일 것

제29조제4항 전단 중 “인력채용”을 “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를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로, “채용 또는”을 “고용 또는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을 “육아휴직등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를 “육아휴직등에”로,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지정, 대체인력 고용 또는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을 “육아휴직등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를 “육아휴직등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39조 중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육아휴직 시작일”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

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고,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 3.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160만원

제95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95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20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150만원을”을 “160만원을”로, “150만원으로”를 “160만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3개월까지:”를 “3개월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50만원을”을 “300만원을”로, “250만원으로”를 “300만원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제9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을 “제95조, 제95조의2,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를 “제95조, 제95조의2, 제95조의3에 따른 금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10 \text{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택배원인”을 “택배원 및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세세분류”를 “세분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이 영 시행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이 영 시행 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이 영 시행 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등의 특례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육아휴직 급여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이 영 시행 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 다만,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삭 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

1. 정년 폐지의 경우: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종전 정년이 58세 미만인 경우는 58세가 되는 날)부터 1년
2. 정년이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
 - 나. 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⑤ 삭제

⑥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삭 제>

자가 아닐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③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한 금액에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대규모 기업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용근로자

2.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3.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② (생략)

③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대규모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3. ----- 29세 ----- ----- -----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 ----- ----- -----.
1. 삭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	3. ----- ----- ----- ----- 육아휴직등 ----- -----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상기업의 사업주	의 파견근로자를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한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1) ----- ----- 육아휴직등의 ----- ----- ----- ----- 육아휴직등을 ----- ----- ----- 고용 또는 사용하여 -- -- 고용 또는 사용한 --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	2) ----- ----- ----- -----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 ----- ----- ----- 육아휴직등 ----- -----

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나. 삭 제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
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
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
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
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
할 것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
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
업주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
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일 것

-----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

-- 고용 또는 사용한 --
---.

다. ----- 고용 또
는 사용하기 -----

고용 또는 사용 기간-----
----- 고용 또는 사용
관계 -----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
나 부여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
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
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
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
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
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
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
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②·③ (생 략)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
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
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
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
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
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
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 또는 업무

의 사업주. 다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일 것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인력의 고
용 또는 사용-----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

----- 육아휴직등을 사용하
기 -----

----- 고용 또는 사용, -

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⑤ 육아휴직등을

육아휴직등에

지정, 대체인력 고용 또는 사용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생략)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가. (생략)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

⑥

1. (현행과 같음)

2.

육아휴직등을

아휴직등이

가. (현행과 같음)

나.

육아휴직등

시간 단축의 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 0분의 50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 으로 보아 제17조, 제19조, 제24 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 ----- ----- ----- 제24 조----- -----.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생 략)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 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 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 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 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② ----- ----- ----- ----- ----- ----- ----- ----- ----- -----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 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 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 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삭 제>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 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 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② ~ ④ (생략)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② (생략)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신청서를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

<삭 제>

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 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
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
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
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

레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
산한 금액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
시적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
시적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
음)

<삭 제>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
의 특례) ① -----

제95조, 제95조의
2, 제95조의3에 따른 금액에서

<삭 제>

<삭 제>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 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 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 는 금액(220만원)을 상한 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 한액으로 한다)	10 (주당 단축 근로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 제 단축한 시간) 단축 전 소정근 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 시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단축 전 소정근 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 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 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 험자의 범위)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 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u>세 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 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 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 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 치는 사람</u>	2. ----- ----- ----- ----- <u>세분 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u> - ----- ----- -----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u>택배원인</u> 사람으로 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 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 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 람	3. ----- ----- <u>택배원 및 세세분류 에 따른 그 외 배달원인</u> ---- ----- ----- -----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u>세세 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u>	7. ----- <u>세분 류</u> -----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u>택배원</u> 으로서 퀵서 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 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 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가.·나. (생 략)	12. ----- ----- <u>늘찬배달원</u> ----- ----- ----- ----- ----- ----- -----.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